CHUNG WOO
관세법인 청 우

Newsletter
Sep. 2016

Monthly Customs Newsletter

[대표관세사 인사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내 물류산업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억류・납기지연, 이용 가능한 선복량 감소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추가 하역과 대체선박 수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당장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대규모 구조조정, 국가산업 신뢰도 하락 등 후속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오너일가에서 사재를 출연하고 정부 기관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물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입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관세법인 청우도 신속한 물류흐름과 고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 용 남

[관세동향]

▶ 하반기 수출,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듯

세계 수출시장의 하락세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HRI)는 7월 25일 발표한 '현안과 과제(최근 수출 환경 점검과 시사점 ? 하반기 수출 구릉지형 회복 가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의 6월 수출 증감률이 -2.7%로 12개월 만에 최소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2분기 들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수출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H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출의 회복 속도가 앞으로도 견고할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지 진단하고 시사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신흥국 경기 불안 여전, 세계 경제 회복 속도 견고하지 않아

HRI는 우리나라 수출 환경을 크게 세계 수출 환경과 주요 수출 지역별 환경으로 구분해서 파악했는데, 먼저 세계 수출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계 수입 수요의 경우 선진국의 수입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신흥국의 수입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추세를 통해 세계 수입물량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 수요는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신흥국은 지난해 이후 수입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으로 IMF와 OECD 등 국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어서 지금의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절대 빠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계 생산과 수출물량을 중심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신흥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생산활력이 떨어지고, 수출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추세를 통해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 둔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수출물량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증가율이 둔화했으며, 신흥국의 증가율이 더 빠르게 하락했다.

유가 하락세 진정,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커져

[관세동향]

▶ 하반기 수출,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듯

유가와 수출물가를 중심으로 보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배럴당 4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세계 수출물가도 상승세를 보이는데, 올 6월 현재 국제 유가가 평균 40~50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수출물가 역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엔고 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는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은 수출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엔고 현상으로 이어져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에는 긍정의 영향을 주겠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화의 환율 변동성도 커진 점은 수출 회복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 탄력적 성장보다는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듯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최근의 성장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올 들어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는 점은 앞으로 對미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산업생산 부진이 이어져 對중 수출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봤으며, 유럽은 유로존의 소비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 對EU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하반기 수출은 유가 상승과 미국의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아 계곡형(v)의 탄력적 성장보다는 구릉지형(?)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수출 회복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이 주요인으로 수출 물량은 신흥국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엔고 현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나아지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하반기 리스크 요인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수출 잠재력 높여야

HRI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향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수출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수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세동향]

▶ 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관세청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 불법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8월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로,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 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를 보도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막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해당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발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에는 현재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對중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와 잦은 가짜 분유 파동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한국産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역직구 판매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은 해외 소비자의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의 수출 성장은 물론, 정식 수출통관을 거쳐 얻는 다양한 수출기업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참여 업체를 꾸준히 확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수시로 점검해 수출통관 인증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동향]

▶ 원산지 거짓 표시 되풀이할수록 형량 무거워진다

앞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재범자의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다. 또한 원산지표시 의무자와 관련한 법 조항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게 가중처벌 규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지만, '상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법 규정 도입 이후 처벌 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로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당한 자는 지난해 149건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벌금은 지난해 평균 163만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원산지 거짓 표시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벌칙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도 명확하게 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유통 중인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대외무역법? 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등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또한 유사한 위반 행위에도 법률에 따라 처벌형량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을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대외무역법」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차이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 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짓 표시 위반자의 형량을 일치시켰으며,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도 형량 하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동향]

▶ 통관·보세 등 관세 규제개혁으로 혜택은 늘리고, 불편은 줄였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 추진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수출지원 혜택은 늘었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5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내부직원의 개선의견을 수렴해 총 11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7월 28일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0개 과제 중 특히 주목할만한 과제는 여행자휴대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 완화로, 여행자가 EU에서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의 EU産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졌다.

그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수입신고를 정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첨부서류 제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조립식 의자 수입 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입업체 입장에서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든 것도 눈에 띄는 과제로 꼽힌다.

또한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했다.

아울러 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 정책인 CARE-Plan 지원대상 금액을 확대했다.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지난해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까지 높여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한 것이다.

관세청은 채택된 추진과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동향]

▶ 2차전지·OLED 등 23개 신산업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2차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는 수입 시 기본 관세율 3~8%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해 관련 산업에 대해 약 137억원의 관세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취약산업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지원하는 51개 품목과 함께하면 관세지원금이 약 4,854억원에 달한다.

23개 품목은 ▲에너지·환경분야에서 2차전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설비·원부자재 16개 품목(관세지원액 89억 8,000만원)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분야에서 OLED·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 5개 품목(46억 8,000만원), ▲융·복합 소재 분야 탄소섬유·폴리케톤 생산설비 2개 품목(6,000만원)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7월 27일 개정하고, 인산리튬(2차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2차전지 제조용) 등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지정했다(별표 1의 가).

*** 할당관세**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 내에서 수입될 때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는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이중관세율제도이다.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할당관세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정경제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는 할당관세 지원 범위를 검토한 후 적용 품목 및 세율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율 조정은 기본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가감된다. 관세율을 정하는 법의 예외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 대상 물품은 신중하게 지정되고 기간과 수량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관세동향]

▶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법적 가산요소를 합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합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질문]

o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내려받고,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필요한 License Key Code를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License Key Code를 받기 위한 대가를 지급(Invoice를 첨부한 외화 송금방식)해야 함.

o 동 소프트웨어를 수입된 장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하거나 수입된 장비가 아닌 일반 PC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회신]

o「관세법」제15조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므로,

o 질의의 경우처럼 무체물인 소프트웨어를 매체에 수록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o 또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된 장비가 아닌 일반 PC에 사용하거나 이미 수입된 장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장비의 가격에 가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함(관세평가과-840, 2009.4.7.)

[관세동향]

▶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 해설 】

위 사례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내려받고,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필요한 License Key Code는 전자우편으로 받을 때 License Key Code의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합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지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는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관세법령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합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으로 받고 동 소프트웨어를 수입된 장비의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하거나, 수입장비가 아닌 일반 PC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인지가 질의 요지다.

이에 대해 관세당국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무체물인 소프트웨어를 매체에 수록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장비가 아닌 일반 PC에 사용하거나 이미 수입된 장비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세동향]

▶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매개체에 수록되거나 하드웨어(장비)에 설치돼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위 사례와 같이 인터넷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반도체 등에 장착해 수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디스크, 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제8523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또는 명령(data or instruction)을 말하므로 음향, 영상, 비디오 기록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적회로(IC), 반도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WTO 관세평가위원회는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데이터나 명령(소프트웨어)이 수록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전달매체 자체의 비용이나 가격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데이터 또는 명령의 비용이나 가격이 해당 전달매체의 비용 또는 가격과 구별되면 데이터 또는 명령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매개체에 수록하지 않고 하드웨어에 수록해 수입했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하드웨어를 분류하는 세번으로 하드웨어의 가격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위 사례에서의 회신과 관련해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미 수입된 장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회신내용과 달리 사안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내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설계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해 필요에 맞게 다양한 수술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된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권리사용료에 대해 이는 수출 판매 시 수술횟수가 제한된 물품으로 횟수를 추가하기 위해 지급한 인증서의 대가로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관세법」제31조~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세동향]

▶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풀어 물류 활성화할까?

국토교통부는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세계 물류시장이 전자상거래 확산과 유통·IT 등 산업 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물류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제도가 경직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포럼 개최와 별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50여 차례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업계 및 차주단체와 합의함으로써 이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 vs 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 vs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 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 대수를 1대에서 20대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근 차량 수요가 늘어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개인(소형) 업종과 일반 업종 모두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일반 업종의 증차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에 따라 일자리가 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해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도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해관계자 간 양보와 협조 속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관세동향]

▶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수출입화물 처리 비상'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 2~3개월간 수출입 화물처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업계와 기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한국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 매출 8조원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해운·항만·물류시장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와 화물 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2~3개월간은 수출입화물 처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이미 선적한 화물 54만TEU의 처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8월부터 10월 초까지가 원양항로 성수기란 점을 고려할 때 한진해운의 원양 수출화물을 처리할 선박을 섭외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산항을 경유하는 한진해운의 단독 노선인 미주 3개 노선과 유럽 1개 노선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협회와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과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점검했다. 먼저 강제하역 당한 화물은 최종 목적지까지 선박 섭외를 안내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원양 수출 항로에는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현재 운항을 중단한 한진해운 단독 노선 중 미주 1개, 유럽 1개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한~일 간 항로와 동남아 항로는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연근해 선사 협의체에서 대체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선·화주 협력을 통해 화물 유치와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과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해 국적 원양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TA 뉴스]

▶ 印尼 **세관, 직접운송 여부 검사 강화 입증서류 갖춰야**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이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한·ASEAN FTA를 활용해 對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는 직접운송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화물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돼야 한다.

만약 해당 화물이 환적(제3국 항구에서 배를 바꾸는 것), 경유(배를 바꾸지 않고 제3국 항구에 잠시 정박만하는 것) 등 제3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될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3국을 거쳐 화물이 운송됐지만 직접운송된 것과 같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3국 경유 또는 환적 화물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각종 상업서류, 그리고 경유 또는 환적지 세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제3국 항구에서 화물의 품질, 안전, 보관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이다.

참고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란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또는 환적 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선하증권으로, 일반 선하증권과는 달리 선하증권상 중간 경유 또는 환적지가 표시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